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01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의 교육, 상담 등 지원을 총괄하며 서울시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서,
- 나. 법에서 정한 보육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제2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영유아보육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는 보육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
- 특히 부모가 아이돌봄 걱정 없이 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6천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역할이 중시되고 있음

다. 위탁사무 내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 보육교직원 및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시민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이용실태조사 등
- 시설·장비·비품 등의 구매 및 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규모 : 679.1 m^2)
- 개소일자 : 2000. 3. 1.

- 이용대상 : 영유아 및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위치도



- 지원시설 :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자료실 등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19. 10. 1. ~ 2022. 9. 30.)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개모집)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없음(재위탁 사업 비대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67백만원(국비75백만원, '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565백만원, 사업비 796백만원, 운영비 406백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3조

제13조(구성)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영26조의 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④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9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보육담당관 보육기획팀 전소민(☎ 2133-5094)